

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18건의 통보·시정 및 현지 조치

구 분	신분상 조치 (건/명)				행정상 조치 (건)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통보	개선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시정	권고	현지 조치
18	2	-	1	1	16	7	-	1	3	2	-	3
10	10	-	9	1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번호	조치기관	처분사항	제 목	인원
1	울진서(경비함정)	기관주의	현장업무포털 시스템 통합대기명령부 결재 미이행	-
2	울진서 (경비구조과, 장비관리운영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통보	응급구조물품(산소소생기 및 의약품) 관리미흡	-
3	울진서(해양안전과)	기관경고 개인주의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관련 업무처리 미흡	1명
4	울진서(해양안전과)	통보	파출소 지도점검 관련 반복 지적사항 관리 소홀	-
5	울진서(수사과)	통보	수사첩보(통보이상 평가) 처리절차 미준수 및 관리 부실	-
6	울진서(정보외사과)	기관주의	가축질병·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훈련 누락	-
7	울진서(정보외사과)	통보	보안장비 매월 점검(보안정보관리 시스템 입력) 관리 미흡	-
8	동해청(기획운영과) 소속서(기획운영과)	통보·시정 개인경고	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9명
9	울진서(기획운영과)	통보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 부적정	-
10	울진서(기획운영과)	통보	관서운영경비 지도점검 업무처리 미흡	-
11	울진서(기획운영과)	기관주의 시정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12	울진서(경비구조과)	현지조치	수난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민간세력 수당지급 업무 소홀	-
13	울진서(수사과)	현지조치	변사사건 처리 절차 이행 미흡	-
14	울진서(기획운영과)	현지조치	정부구매카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미흡	-

2. 주요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 11건

1) 현장업무포털 시스템 통합대기 명령부 결재 미이행 (기관주의)

- (판단기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2조(정박중 근무), 제25조(정박당직 임무)에 따르면, 일과 중 함·정장은 함정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장이 함·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하고, 정박근무 중에는 당직관이 일지기록 유지 등 함정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울진서에서는 「당직함정 운영 및 당직근무 지침」을 수립하여 중·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2척 이상 동일 장소에 정박 계류 시 통합정박당직근무를 편성·운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통합대기 근무 명령부를 작성하여 근무편성, 무기탄약고 열쇠 인계인수,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을 기사란에 작성·관리하여야 함
- (문 제 점) 다음 [표-4]와 같이 2025년 1월 ~ 9월 기간 중 통합대기근무 명령부 전체 268건 중 총 5건(미결재 3건, 반려 2건)의 결재를 누락하였고, 2023년 10월 ~ 2025년 9월 기간 중 근무편성에 따른 개인 서명 345건 누락

[표-4] 통합대기 근무 명령부 결재 누락 현황('25년 1월~'25년 9월)

구분	해당년도	결재상태				총계
		대기 (기안자 미상신)	결재대기 (당직관 미결재)	반려	서명누락	
통합대기 근무 명령부 (전용부두 정문당직, 통합당직 시 근무일지)	'25년 1월 ~ 9월	2건	1건	2건	-	5건
통합대기 근무 명령부 (근무편성)	'23.10월 ~ 12월				33건	33건
	'24. 1월 ~ 12월				167건	167건
	'25. 1월 ~ 9월				145건	145건
총 미결재 건수		2건	1건	2건	345건	

자료: 울진해양경찰서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조회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 미결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시고, 앞으로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정 정박당직 시 근무일지 기록 및 관리에 대하여 부서원 대상 재발방지 자체교육, 점검 강화 등 관리 감독 철저(기관주의)

2) 응급구조물품(산소소생기 및 의약품) 관리미흡 (통보)

- (판단기준) 함정 및 파출소에서 보유중인 고압용기(공기호흡기, 산소소생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제작기한 10년 미만은 5년, 10년 이상은 3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의 사전차단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시행요구
- (문제점) 다음 [그림-1]과 같이 고압용기 재검사 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용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용기에 충전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부서에서 장비점검을 누락하였고, 보관상태도 부실하여 전반적인 관리가 부적정한 것을 확인

[그림-1] 산소소생기 보관 현황('25년 11월 기준)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충전완료(P-○○정)	미충전(P-△△정)		보관상태 미흡(☆☆☆)

자료 : 감사기간 중 울진해양경찰서 현장 확인자료 재구성

- 현장부서의 의약품 실제 보유량과 구급표준관리시스템 상 관리대장의 입력수량이 상이하였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목록상 남아있거나 실제 폐기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그림-2]와 같이 의약품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

[그림-2] 경비함정 의약품 보관 현황('25년 11월 촬영)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유효기간 경과(P-●●정)	유효기간 여유(5종 6개)	유효기간 경과 (13종 41개)	보관상태 미흡(P-★★정)

자료 : 감사기간 중 울진해양경찰서 현장 확인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조현장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응급구조물품 및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통보)

3)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관련 업무처리 미흡 (기관경고 · 주의)

- (판단기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서 정한 소속 해양경찰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 기관장(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다음 [표-5]와 같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관련 해양경찰 서장의 결재 없이 과장 전결 업무처리 및 비전자문서 등록 누락

[표-5]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관련 문서결재 및 비전자문서 등록현황

연도	개최일(종료일)	기관장 결재		비전자문서 등록		비고
		계획	결과	계획	결과	
2023	2023. 11. 15.	○	×	○	×	결과보고 : 과장전결
2024	2024. 10. 24.	○	×	○	×	
2025	2025. 05. 28.	○	×	○	×	

자료: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에서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표-6]과 같이 최근 3년간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미흡한 사실 확인

[표-6] 회의록 미작성 현황 <'23. 10. 1. ~ '25. 9. 30.>

연도	주관부서	위원회명	개최일(종료일)	회의록	비고
2023	○○○○○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2023.11.15.	×	대면
2024			2024.10.24.	×	대면
2025			2025.05.28.	×	대면

자료: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법률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대상 교육 실시 등 업무관리 철저(기관경고)
-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담당공무원 ○○○(주의)

4) 파출소 지도점검 관련 지적사항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통보)

- (판단기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46조(지도방문)에 따라,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 등 근무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22년 해양경찰청 주관 「주요정책 소속기관 전달체계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구조안전국장(해양안전과장)은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 지적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분기 점검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통일하였고, 지방청에서는 소속서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총괄 관리하도록 업무지시
- (문 제 점)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를 파출소에만 하달하면서 동해청 경비안전과(해양안전계)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아 지방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불가, 지적사항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표-7]과 같이 유사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주요정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실시 내용만 보고되어 여전히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

[표-7] 울진해양경찰서 파·출장소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례

해당연도	주요 지적사례	반복 지적횟수	재확인여부
2023년	· 청사 점검 관련 일일 점검 및 근무일지 기입 필요	2회	×
	· V-PASS 시스템 관련 업무 미흡(현행화 누락 등)	4회	×
	· 연안구조정 및 출장소 내 비치 소화기 점검 누락	2회	×
	· 일부 창고 및 미사용 물품 등 정리정돈 미흡	3회	×
2024년	· 수상오토바이 및 배수펌프 용 휘발유 보관 적재함 마련 필요	1회(2분기)	설치확인 불가
	· V-PASS상 위험구역 설정이 미비한 파출소 자체 설정 필요	1회(3분기)	×
2025년	· 일부파출소 구조정 소화기 점검 누락	1회(2분기)	×
	· 1인 조업선 안전관리 미선정 파출소 안전관리 필요	1회(3분기)	×
공통사항	※ 2024년~2025년 결과보고 주요내용 · 중점 확인사항(주요정책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교육 등)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였으나, 실제 개선 여부 확인불가		

자료 : '23~'25년 울진해양경찰서 파·출장소 지도점검 결과 재구성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파·출장소 지도점검 시 유사·동일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마련(통보)

5) 수사첩보(통보이상 평가) 처리절차 미준수 및 관리부실 (통보)

- (판단기준)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첩보를 발굴·수집해야 하며,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수사첩보는 평가권자가 신속히 검토 후 평가·배당하여야 하고,
 - 이때, 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1개월 이내 입건전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체보관 하여야 함
- (문 제 점)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평가권자가 통보 이상 평가한 수사첩보에 대하여, 평가 후 1개월이 지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거나,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을 확인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평가권자 및 시스템 관리자 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과 총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 등 대책방안 마련(통보)

6) 가축질병·감염병 재난 위기대응훈련 누락 (기관주의)

- (판단기준) 「국가위기관리 세부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031호)」 제95조(해경서 자체교육), 제100조(연습·훈련주기)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가축질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전파, 상황분석·평가·판단 등 소속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대응역량 강화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교육, 연습·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문 제 점) 가축질병·감염병 유입대비 훈련의 반기1회 실시여부 확인 결과, 2023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 통신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그 외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총 2회 훈련을 누락하여 연 1회만 실시
 - 특히, 2023년 울진서 종합감사 결과 「국가위기관리(감염병·가축질병) 상황대처 훈련 미흡」 사항을 확인하여 정보외사과 담당자 교육실시 등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훈련 실시 후 2024년도 상반기 훈련을 누락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소홀한 것을 확인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 주요 국가위기대응 교육·훈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 규칙에 따라 훈련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등 관련 업무철저(기관주의)

기 보안장비 매월 점검(보안정보관리 시스템 입력) 관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보안장비 관리·운영지침」 제9조(관리)에 따르면 정보예산 이용 구매한 보안장비의 경우 물품(장비관리과)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안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입력)하여 장비사용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여 운용하며,
 - 물품관리 부서장은 물품관리법에 의거 망실, 파손방지 조치 및 목적 외 사용 통제와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부서원 중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 후 보안정보 관리 시스템에 누락 없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문 제 점) 정보외사과 ●●●에서 운용 중인 주요물품 6종에 대하여 보안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8]과 같이 '23. 10월 ~ '25. 1월까지 총 16개월 간 보안정보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누락 확인

[표-8] 보안정보관리시스템 등록된 보안장비 내역 및 점검 일자

해당 월 장비명	25.01. 이전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세트	×	2.20.	3.20.	4.21.	5.16.	6.13	7.07.	8.25.	9.22.	10.21.
○○○○○측정기	×	2.20.	3.20.	4.21.	5.15.	6.10	7.08.	8.25.	9.19.	10.16.
◇◇◇◇ ◎◎	×	2.12.	3.03.	4.21.	5.18.	6.13	7.11.	8.11.	9.9.	10.03.
◇◇◇◇ ■■	×	2.18.	3.23.	4.29.	5.26.	6.23	7.20.	8.16.	9.12.	10.09.
◇◇◇◇ ♠♠	×	2.22.	3.17.	4.14.	5.12.	6.10	7.08.	8.06.	9.04.	10.03.
◇◇◇◇ ♠♠	×	2.20.	3.27.	4.17.	5.14.	6.11	7.09.	8.06.	9.03.	10.02.
▲▲▲	'25년 6월 구매						7.16.	8.25.	9.23.	10.20.

자료 :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해당기간: '23년 10월~'25년 10월)

- 또한, 합정 및 각 파출소에 배정된 보안장비를 매월 점검 후 현장업무 포털시스템 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보안정보시스템에 점검 사항을 입력해야 함에도 [표-9]와 같이 다수부서에서 근무일지와 보안 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것을 확인

[표-9]야간투시경 매월 점검 후 시스템(근무일지, 보안정보시스템) 입력누락 현황

순번	관리부서	근무일지 / 보안정보 관리시스템	23. 10.	23. 11.	23. 12.	24. 01.	24. 02.	24. 03.	24. 04.	24. 05.	24. 06.	24. 07.	24. 08.	24. 09.	24. 10.	24. 11.	24. 12.	25. 01.	25. 02.	25. 03.	25. 04.	25. 05.	25. 06.	25. 07.	25. 08.	25. 09.	25. 10.
1	◇◇파출소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2	◆◆파출소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3	□□파출소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4	■■■파출소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5	◎◎함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정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7	P-△△정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해당기간: '23년 10월~'25년 10월)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현장에서 보유 중인 보안장비의 즉응 태세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 관리책임자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효율적인 보안장비 관리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통보)

8) 공무원 복무관리 미흡 (통보·시정·주의)

○ (판단기준)

가. 병가 사용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나. 병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①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고,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에 따라 공무원은 유·무급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함

다. 임신검진휴가 사용 부적정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직원의 휴가제도 사용현황 점검 결과 복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 확인

가. 병가 사용 부적정

다음 [표-10]과 같이 병가 사용일수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의 내용이 병가의 신청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신청하여 사용한 사례 확인

[표-10] 진단서 첨부 일반병가 증빙서류 불일치 현황('23. 10. 1. ~ '25. 9. 30.)

연번	현 부서	성명	시작일	종료일	사용일	증빙서류
1	●●파출소	○○○	20250107	20250307	60	재태 연령 및 분만예정일 명시 진단서('24.12.2.)
2	◆◆파출소	△△△	20231215	20231215	1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 '공가' 사유
			20240110	20240114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3	■□파출소	□□□	20231219	20231219	1	통원확인서(12.19.)
			20231223	20231223	1	통원확인서(12.19.)
			20231226	20231226	1	통원확인서(12.19.)
			20240101	20240101	1	진료확인서(12.27.)
			20240217	20240217	1	통원확인서(2.17.)
			20240411	20240411	1	진료확인서(4.11.)
			20240801	20240801	1	진료확인서(8.1.)
			20250708	20250708	1	진료확인서(7.8.)

연번	현 부서	성명	시작일	종료일	사용일	증빙서류
3	▣▣파출소	□□□	20250711	20250711	1	진료확인서(7.13.)
			20250713	20250713	1	진료확인서(7.13.)
			20250719	20250719	1	진료확인서(7.19.)
			20250812	20250812	1	통원확인서(8.12.)

자료: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소명되지 않은 자료 기록)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다음 [표-11]과 같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휴가사용일과 증빙서류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부적정 사용사례 확인

[표-11]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불일치 현황('23. 10. 1. ~ '25. 9. 30.)

연번	현소속	부서	성명	시작일	종료일	사용일	증빙서류
1	동해청	●●●	☆☆☆	20240329	20240329	1	미첨
2		●●●	◇◇◇	20231125	20231125	1	미첨
				20241216	20241216	1	미첨
3		●●●	★★★	20231207	20231207	4:00	미첨
				20231222	20231222	4:00	미첨
				20240314	20240314	1	미첨
				20240517	20240517	1	미첨
4	속초서	○○○○○○○	○○○	20231115	20231115	1	자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5	동해서	▲▲▲▲▲	▣▣▣	20231028	20231028	7:00	전국○○○○경기 일정표
				20250523	20250523	1	전국○○○○ 경기 일정
6		△△△△△	♠♠♠	20250115	20250115	1	약국 카드 명세서 (구매 의약품 내역 ×)
7				♣♣♣♣♣	♠ ♣ ♠	20240226	20240226
		20240229	20240229			1	20240227 진료예약안내 문자
8	울진서	▽▽▽▽▽	◆◆◆◆	20240105	20240105	1	미첨
9		◆◆◆◆◆	●●●	20240905	20240906	2	가족관계증명서
10	울진서	ⓂⓂⓂⓂⓂⓂ	○○○	20240925	20240925	1	가족관계증명서
				20241108	20241108	1	가족관계증명서
				20250123	20250124	2	가족관계증명서
11	포항서	▤▤▤▤▤▤	♣♣♣	20241207	20241207	1	약국 카드 명세서 (구매 의약품 내역 ×)
●●●●●		□□□	20240729	20240729	1	○○○학원 행사 안내문	
			20241025	20241025	1		
			20250116	20250116	1		
13		●●●●	■ ■ ■	20240809	20240809	1	산부인과 결제 영수증

자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다. 임신검진휴가 사용 부적정

다음 [표-12]와 같이 실제 임신검진일이 아님에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임신검진휴가 부적정 사용 사례 확인

[표-12]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 불일치 현황('23. 10. 1. ~ '25. 9. 30.)

연번	현소속	부서	성명	시작일	종료일	사용일	증빙서류	
1	강릉서	○○○○○	◎◎◎	20231109	20231109	1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0231115	20231115	1	미첨	
				20231117	20231118	2	미첨	
				20231121	20231121	1	미첨	
				20231123	20231124	2	미첨	
				20231127	20231127	1	미첨	
2	동해서	△△△△△	◇◇◇	20240108	20240108	1	임신확인서	
				20240111	20240111	1	미첨	
				20240118	20240118	4:00	미첨	
3		□□□□□	◆◆◆	20240422	20240422	1	미첨	
				20240520	20240520	1	미첨	
				20240607	20240607	1	미첨	
				20240610	20240611	2	미첨	
				20240613	20240614	2	미첨	
4		울진서	○○○○○	●●●	20231023	20231024	2	미첨
					20231030	20231031	2	미첨
5	●●●●●		◆◆◆	20240308	20240308	1	임신확인서	
	6		▲▲▲▲▲	▣▣▣	20231121	20231122	2	미첨
20231130					20231130	1	미첨	
20231208					20231208	1	미첨	
20240122					20240122	1	미첨	
20240205					20240206	2	미첨	
20240222					20240223	2	미첨	
7	■ ■ ■ ■ ■		♠♠♠	20240117	20240117	1	미첨	
				20240131	20240131	1	미첨	

자료: 강릉·동해·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강릉·울진·포항해양경찰서장은 복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가제도 사용자 및 승인권자를 대상으로 개정 규정, 사례 등 교육 실시(통보)

- “복무규정 위반 총괄 세부내역”과 같이 관련자에 대해 국고 환수 등 규정에 맞는 조치이행(시정)
- 관련자 중 의무위반행위의 횟수가 많거나 고의성 여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자 9명(경고)

9)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 부적정 (통보)

-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각 비목별 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
- 비목별 지침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은 자산취득비(430-01목)로,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에는 따른 임차료(210-07목)로 집행하여야 함
- (문 제 점) 다음 [표-13]과 같이 4건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비목별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사실 확인

[표-13]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연번	건 명	지출일자	집행 예산과목	금 액	정당 예산과목	비고
1	○○○○ 차량용 인식기 구매	2025-05-19	공사비 (420-03)	10,000,000	자산취득비 (430-01)	공사기준 및 작업지시서 누락 (물품구매)
2	○○○○ 차단기 차량 인식기 구매	2025-05-19		5,180,000		
3	○○○ 소프트웨어 구독권 구매 (▲▲▲▲▲▲▲▲)	2025-08-04	자산취득비 (430-01)	561,000	임차료 (210-07)	프로그램 1년 사용권
4	○○○ 소프트웨어(◇◇◇◇) 구독권 구매	2025-07-22		560,000		

자료: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각 사업부서의 예산·회계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국가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통보)

10) 관서운영경비 지도점검 업무처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의 편의성과 관서운영경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출관은 각 부서 출납공무원을 대상으로 관서운영경비 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반기에는 집합교육, 하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담당부서에서는 관서운영경비 처리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 보다 강화하여 분기마다 관서운영경비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으나, 동일 부서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공통적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등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관서운영경비 지도점검 후 사후관리를 통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통보)

11)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기관주의 · 시정]

-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임과 숙박비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여비 정산을 신청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은 증거서류 검토 후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 제 점) 해경청에서 워크숍 개최 시 참석자 대상 출장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제외하도록 공문에 명시하였으나, [표-14]와 같이 식비를 감액 정산하지 않고 모두 지급한 사실 확인

[표-14] 워크숍 참석자 식비 미공제 내역

연번	부서명	계급	성명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수	식비 지급액(시정액)
1	●●●●과	○○	△△△	천안시	2024년 ♣♣♣♣ 워크숍	‘24.2.22. ~ 2.23.	2	50,000원
2	●●●●과	□□	◇◇◇				2	50,000원
3	●●●●과	◎◎	◆◆◆	천안시	2024년 ♠♠♠ 워크숍	‘24.2.22. ~ 2.23.	2	50,000원
4	●●●●과	■	▲▲▲				2	50,000원
총 합계금액								200,000원

자료: 울진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과오지급한 국내여비(식비) 200,000원 환수조치(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 철저(기관주의)